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739호

'24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전력분야 정책수립·제도개선·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백만원, 월)

구분	과제명	금액	기간
1	국·공유지 설치 재생에너지 허가에 대한 기한 검토	25	3
2	주요국 전력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이 조사 및 국내 시사점 연구	26	7
3	전력 직접거래 고도화를 위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40	6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4년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 자격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학교 및 부설연구소
-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etep.or.kr>)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등록기간 : 2024. 10. 18.(금) ~ 11. 7.(목) 18:00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 전산등록 문의처 : ☎ (02) 6007 - 0359

*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24. 11. 7.(목)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기 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 : 전력정책개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마감후 2주이내)
 - 심의 기준 : 전력산업정책개발 운영지침 제11조(수행기관의 선정)④
-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 (02) 6007 - 0363, 0364
-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24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발전사업 허가
과제명	국·공유지 설치 재생에너지 허가에 대한 기한 검토				
제안부서	전기위원회 사무국	과제제안자	여송화 사무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p><input type="checkbox"/> 현행법상 국·공유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풍력·태양광을 설치하면 사실상 영구히 운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p> <p>○ (현황) 발전사업 허가권리가 사실상 무한하고, 리파워링을 통해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하며, 기술발달에 따라 용량도 크게 증가</p> <p>○ (문제점) 특히, 국공유지(공·유수면 포함) 발전소의 경우, 민간발전사가 사실상 장기적으로 독점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필요</p>				
내용 및 범위	<p><input type="checkbox"/> 발전사업 허가권 존속기간 도입의 장·단점을 검토하되, 에너지원별 특성·경제성·기 투입설비·존속기간 만료 시 발생가능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에너지원별로 개별 존속기간을 함께 검토</p> <p>○ (대상) 국공유지·공유수면의 육·해상풍력, 태양광(수상 태양광 포함) ※ 허가현황(24.8) : 해상풍력 95건(30GW), 육상풍력 156건(5.3GW), 수상태양광 26(3GW)</p> <p>○ (존속기간) 에너지원별 특성, 기술동향, 투입설비, 경제성 재설계 등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별로 차등을 두어 존속기간 검토</p>				
계약방법	○ 공개경쟁을 통한 경쟁입찰				
연구기관	○ 공개경쟁				
연구기간	○ 3개월				
연구사업비	○ 25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 전력산업정책개발 연구용역('24.하반기 25백만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전기사업법 개정(안) 마련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법·제도 개편
과제명	주요국 전력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이 조사 및 국내 시사점 연구				
제안부서	전력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정민규 서기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 및 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 대응 노력중 ○ 이같은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계통 보강, 기존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성 증대 ○ 세계 주요국들은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산업 및 시장 변화에 대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법령 개정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 관련 법령 개정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필요 				
내용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전력산업 환경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등)의 전력산업 현황 -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등)의 전력산업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및 사유, 개정 후 성과(인·허가 제도, 전력망 구축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 주요국 사례가 우리 전력정책에 주는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전력산업 관련 법령 개정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전력산업 환경 변화 - 전력산업 관련 법령의 문제점 식별 및 개정 필요성 -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개정방향 				
계약방법	○ 계약방법: 일반경쟁				
연구기관	○ 연구기관: 공개경쟁				
연구기간	○ 연구기간: 7개월				
연구사업비	○ 연구비: 26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 전기사업법령, 관련 고시·지침 등 개정을 위한 방향성 도출 및 근거 자료로 활용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전력거래
과제명	전력 직접거래 고도화를 위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제안부서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제제안자	계승모 사무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도입에 따라 한정된 지역(분산특구)에서 판매시장이 간접적으로 개방 ○ 동 특구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력산업 개편을 완료한 국가(일본 등) 의 송·배전사업자의 역할 구분, 계량 및 정산 주체, 관련 법 체계 연구를 통해 시사점 도출 및 적용 방안 연구 필요 ○ 이를 통해 분산특구 내 전력거래 활성화로 소비자 편의 창출에 기여 				
내용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완료한 국가의 우리나라의 전기사업법에 해당하는 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이에 따른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등 ○ 전력산업 개편 완료 국가에서 소매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할 때 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한 계량기 설치 주체(판매사업자인지, 배전사업자인지) 및 관리 주체, 망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소매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 등 ○ 분산특구 전력 거래와 유사한 “쌍무계약”의 구체적인 방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경우 소매·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 해당 발전사업자는 소매·판매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공급을 위해 부하추종 등의 방식을 통해 수요에 대한 공급을 맞추며, 전력이 부족한 경우 소매 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형태 - 쌍무계약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시 해당 수용가에 대한 계량기 설치 주체, 정산 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 방식 - 이 경우,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송배전사업자 역할 등 ○ 조사된 사례 시사점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적용 및 특화지역 발전 방안 연구 				
계약방법	○ 공개경쟁을 통한 경쟁입찰				
연구기관	○ 공개경쟁				
연구기간	○ 6개월				
연구사업비	○ 4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제도개선에 활용				